

허위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 (2)

트위터의 리트윗은 인용이 아니라 직접적인 사실적시에 해당

초등학교 교사인 A는 트위터에 게시된 글 중 ‘나는 메갈이다’라는 해시태그가 붙어있는 글과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글을 읽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라는 표현을 쓰며 리트윗하였다. 이 리트윗을 본 B는, A가 ‘메갈리아’의 회원이며 학생들에게 편파적인 성향을 지닌 초등학교 교사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A는 B의 글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메갈리아(Megalia)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혐오를 남성에게 반대로 적용하는 사이트입니다. 메갈리아는 여성혐오를 남성혐오로 똑같이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지금은 폐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메갈 유저라는 표현은 남성혐오자라는 의미로 통용되었습니다. ‘한남충’이라는 단어는 한국남자는 벌레에 비유한 단어로, 한국 남성 전체를 비하하는 속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인 A는 위 단어가 포함된 글을 리트윗한 행위로 인해 메갈리아 회원이라고 지적되면서, 실제로 메갈리아의 회원이든 아니든 학교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A는 단지 트위터에 ‘나는 메갈이다’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거나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글만을 리트윗하였을 뿐 ‘메갈리아’ 회원이 아니고, 직접 ‘한남충’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가 자신을 메갈리아로 몰아가자, 이를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트위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글을 게재할 수 있는데, 이 때 리트윗한 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점은 단순 리트윗인지 아니면 동조하는 리트윗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리트윗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리트윗 내용 중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고, 나아가 그 내용에 일부 동조하거나 공감하는 태도로 공유를 한다면, 이는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그 글을 직접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글의 내용에 일정 부분 동조하면서 이를 공유하기 위하여 리트윗을 한 이상, 이는 직접적으로 ‘한남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A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메갈리아’ 회원이라는 표현은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B는 A가 메갈리아의 회원인지, 남성혐오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되면, A가 메갈리아의 회원인지 더 상세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울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